

정 관

대 한 팔 단 금 협 회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대한팔단금협회” 영문으로 Korean Baduanjin Association(약칭 Koba) (이하 “단체”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협회는 본 회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기찬몸 수련 활동과 각종 기공체조에 대한 수련을 장려하며, 관련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 100세 시대 국민들의 의 건전한 체력향상과 국가체육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60 팔레스빌딩 502호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 중국 전통 기공에 관한 연구
1. 관련 기공체조의 프로그램 연구와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1. 각종 기공 관련 자문 및 지원

1. 정기적인 기공체조 대회 개최 및 참가
 1. 기공체조 연구 서적 간행물의 발간
 1. 관련 학술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1. 세계 각국의 기공 체조와 관련한 연구 및 교류활동
 1.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 회원 및 특별 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 한다.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서 정회원, 일반 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다만,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과 각종 수련 프로그램에 1회 무상으로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본 회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 총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 본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포상 및 징계)

-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 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 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① 표상: 이 협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 의 의결로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징계 :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1. 사무총장 : 1인

1. 상임이사 : 필요에 따라 2인 이내 임명할 수 있다.

1. 이사 : 10인 이내(회장 및 사무총장 포함)

1. 감사 : 1인

1. 위의 임원 이외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1. 사무총장, 이사

제12조 (임원의 선임)

-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견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 1.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1.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 (상임이사)

-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 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되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신규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잔여 임기가 절반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잔여 임기만을 수행할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 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눈(Social Netork Service)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 가능 한 때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 사업계획의 승인
1. 이사회에 제출된 사항
1.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서 참석하는 다른 회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제척사유)

- 재적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1.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 (구성)

이 사회는 본 협회의 최고집행기관이며, 본 협회의 회장 및 제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긴급을 요 하는 사항의 처리

1.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1.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1. 상임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

며 회장은 제외한다.)

1. 기타 주요 사항

단, 중요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소집 및 의사)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제 이사 3분의 1 이상 이목적

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성원은 제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결정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원)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1.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1. 기타

② 협회는 협회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③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 (회계 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 제32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승급 심사비와 기타)

본 회의 기찬몸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정기 승급 심사 시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 관련 사항이 생기는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4조 (회비의 용도)

회비는 기찬몸 수련장의 유지 및 보수, 정기 발표회 및 자료 보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행사를 위한 비용을 발생되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5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매년 3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8장 보 칙

- 제36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37조 (해산)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리) 단체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 할 수 있다.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 설립을 위하여 회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회원) 이 단체 설립 당초의 회장 및 회원은 다음과 같다.

2022. 11. .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날인
회장				
사무총장				
회원				
회원				
회원				